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 869호 2012. 2. 7(화)

# 포항시보

## ◀ 입법예고 ▶

○ 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(제2012-163호) ..... 2

## ◀ 고 시 ▶

○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(제2012-10호)..... 15

○ 도로지정 공고 (제2012-11호) ..... 18

## ◀ 공 고 ▶

○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행정예고 (제2012-210호) ..... 19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**입법예고**

포항시 공고 제2012 - 163호

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. 2. 3

포항시장 박승호

**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관용차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관별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차량의 교체가능 조건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 모두 충족토록 하는 물품수급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가. 차량의 내구연한 조정(안 별표 1)

- 승용차(전용, 의전용) : 5년 ⇒ 7년,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

- 승용차(업무용) : 6년 ⇒ 7년,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
  - 승합용(중형, 소형, 경형) : 6년 ⇒ 7년,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
  - 화물용 : 6년 ⇒ 7년,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
  - 특수용 : 6년 ⇒ 7년,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
- 나. “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”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**3. 참고자료**

-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처리 작성지침(2011. 7 행안부)

**4. 규칙안 : 붙임**

**5. 입법예고기간 : 2012. 2. 3. ~ 2. 22(20일간)**

**6. 의견제출**

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 : 재정관리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제출 및 문의처
  - 보내실 곳 : 포항시청 재정관리과(포항시 남구 시청로 1)
  - 전화 054)270-2545, 팩스 054)270-2490, 이메일 kichoul@korea.kr
- 라. 제출서식

입 법 안	수 정 안	수정 사유

**7. 기 타**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www.ipohang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시 분청”을 “포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분청”으로 하고, “자동차관리법”을 “「자동차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”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6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”를 “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”를 “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”을 “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 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4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2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하고,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20조제2항에 따라” 로 하고,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26조 본문 중 “각호의” 를 “각 호의” 로 하고, “제2호 내지 제6호” 를 “제2호 부터 제6호까지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 하고,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 를 “제2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도로교통법” 을 “「도로교통법」” 으로 한다.

제32조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35조 본문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제35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35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37조 본문 중 “제29조 내지 제32조” 를 “제29조부터 제32조까지” 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차량의 차종·차형·배정대상 및 내구연한(제4조 관련)

차 종	차 형 (자동차관리법에 의한다)	배정대상	내구연한
승 용 (전 용)	대형승용차 (배기량이 2,000cc이상인 차량. 이하 같다)	○ 시 장 ○ 의 장 ○ 부시장	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
승 용 (의전용)	대형승용차	○ 시 본청	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
	중형승용차 (배기량이 1,500cc이상 2,000cc 미만인 차량. 이하 같다)	○ 시 본청	
승 용 (업무용)	중형승용차	○ 시 본청 ○ 시 의회 ○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	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
	소형승용차 (배기량이 1,500cc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
	경형승용차 (배기량이 1,000cc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
	다목적승용차 (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짝형 및 10인승 이하 차량)	○ 각 기관	
	승용화물 겸용 (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차량)	○ 각 기관	
승합용	대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인 차량)	○ 각 기관	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8년간
	중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 하인 차량)	○ 각 기관	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
	소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 하인 차량)	○ 각 기관	
	경형승합차 (배기량이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

차 종	차 형 (자동차관리법에 의한다)	배정대상	내구연한
화물용	대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,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)	○ 각 기관	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
	중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
	소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)	○ 각 기관	
	경형화물차 (배기량이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
특수용	청소차	○ 각 기관	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
	구급차	○ 각 기관	
	분노차	○ 각 기관	
	진료차	○ 각 기관	
	이동수리차	○ 각 기관	
	급수·살수차	○ 각 기관 8년	
	트럭트렉터	○ 각 기관	
	트레일러	○ 각 기관	
	렉카차	○ 각 기관	
	기타특수차	○ 각 기관	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b>제3조(적용범위)</b> 이 규칙은 시 본청, 소속행정기관,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에서 관리·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(이하 “차량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.</p>	<p><b>제3조(적용범위)</b> ----포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----- ----- 「자동차관리법」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7조(정수배정 요청)</b> ①차량관리부서의장이 차량정수배정·임시차량정수배정·차종변경승인·차형변경승인·차량교체 승인·차량교환승인(이하 “정수배정”이라 한다)을 차량총괄부서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<u>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</u>에 <u>별지 제1호서식</u>을 각각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”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물품 배정승인 요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.</p>	<p><b>제7조(정수배정 요청)</b>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----- ----- ②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10조(임시차량정수의 배정)</b> ①차량총괄부서의장은 차량관리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·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</p>	<p><b>제10조(임시차량정수의 배정)</b> ① -- -----6 <u>개월</u>----- ----- --<u>그 밖의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차량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해당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<b>제11조(차종변경 승인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다목적승용·승용 화물 견용·승합용·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.</p>	<p><b>제11조(차종변경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<b>제12조(차형변경 승인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</p>	<p><b>제12조(차형변경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<b>제13조(차량교체 승인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(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</li> </ol>	<p><b>제13조(차량교체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-----</p> <p>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</li> </ol> <p>----- 해당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해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3. ~ 4. (생략)</p>	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5조(정수의 직권감축 등) (생략)</b> 1. (생략) 2. (생략) 3.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</p>	<p><b>제15조(정수의 직권감축 등) (현행과 같음)</b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<b>제19조(차량의 등록) ①</b>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·차형 변경·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<u>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략)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,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.</u> ④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</p>	<p><b>제19조(차량의 등록) ①</b>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</u>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④ <u>제2항에 따라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관리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 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21조(차량관리방법 및 공용표시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중관리부서는 <u>당해</u>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·정비·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<u>기타</u> 차량 운영·관리 전반을 담당한다.</p> <p>③ <u>제20조제2항의</u>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<u>당해</u> 차량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, 배차 및 운전원 관리 등을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·관리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<b>제21조(차량관리방법 및 공용표시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</p> <p>③ <u>제20조제2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6조(기록관리)</b>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<u>각호의</u>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,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<u>제2호 내지 제6호의</u>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</u>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</p>	<p><b>제26조(기록관리)</b> -----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 ----- <u>제2호부터 제6호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<b>제27조(차고운영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 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p>	<p><b>제27조(차고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1명 ----- -----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28조(지도·점검 등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·점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차량관리·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</p>	<p><b>제28조(지도·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에 ----- -----</p>
<p><b>제31조(운전 주의의무 및 책임) ① ~ ② (생략)</b></p> <p>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·정차, 제한속도위반,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.</p>	<p><b>제31조(운전 주의의무 및 책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③ ----- ----- 「도로교통법」 ----- -----</p>
<p><b>제32조(사고 보고) (생략)</b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사항</p>	<p><b>제32조(사고 보고)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그 밖에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<b>제35조(직접운전차량의 지정·운용)</b>           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<u>당해</u>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,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·운용할 수 있다.</p>	<p><b>제35조(직접운전차량의 지정·운용)</b>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<u>해당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
<p><b>제36조(차량의 운행) ①</b> 제35조의 <u>규정에 의한</u>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② (생략)</p>	<p><b>제36조(차량의 운행) ①</b> 제35조에 <u>따라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7조(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)</b>           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는 제 <u>29조내지 제32조</u>의 규정을 준수한다.</p>	<p><b>제37조(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)</b>            ----- <u>제</u>  <u>29조 부터 제32조까지</u>-----            ----</p>

현 행				개 정 안			
<p><b>【별표 1】</b> 차량의 차종·차형·배정대상 및 내구연한(제4조 관련)</p>				<p><b>【별표 1】</b> 차량의 차종·차형·배정대상 및 내구연한(제4조 관련)</p>			
차 종	차 형 (자동차관리법에 의한다)		내구연한	차 종	차 형 (자동차관리법에 의한다)		내구연한
승 용 (전용)	대형승용차 (배기량이 2,000cc이상인 차량. 이하 같다)	○ 시 장 ○ 의 장 ○ 부시장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5년간	승 용 (전용)	대형승용차 (배기량이 2,000cc이상인 차량. 이하 같다)	○ 시 장 ○ 의 장 ○ 부시장	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킬로 미터 이상
승 용 (의전용)	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(배기량이 1,500cc이상 2,000cc미 만인 차량. 이하 같다)	○ 시 본청 ○ 시 본청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5년간	승 용 (의전용)	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(배기량이 1,500cc이상 2,000cc미 만인 차량. 이하 같다)	○ 시 본청 ○ 시 본청	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킬로 미터 이상
승 용 (업무용)	중형승용차	○ 시 본청 ○ 시 의회 ○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6년간	승 용 (업무용)	중형승용차	○ 시 본청 ○ 시 의회 ○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	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킬로 미터 이상
	소형승용차 (배기량이 1,500cc미만인 차량)	○ 각 기			소형승용차 (배기량이 1,500cc미만인 차량)	○ 각 기	
	경형승용차 (배기량이 1,000cc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		경형승용차 (배기량이 1,000cc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
	다목적승용차 (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썬형 및 10인승 이하 차량)	○ 각 기관			다목적승용차 (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썬형 및 10인승 이하 차량)	○ 각 기관	
	승용화물 겸용 (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 치된 차량)	○ 각 기관			승용화물 겸용 (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 치된 차량)	○ 각 기관	
승합용	대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인 차량)	○ 각 기관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8년간	승합용	대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인 차량)	○ 각 기관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8년간
	중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인 차량)	○ 각 기관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		중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인 차량)	○ 각 기관	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킬로 미터 이상
	소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하인 차량)	○ 각 기관			소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하인 차량)	○ 각 기관	
	경형승합차 (배기량이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		경형승합차 (배기량이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
화물용	대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,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)	○ 각 기관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	화물용	대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,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)	○ 각 기관	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킬로 미터 이상
	중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 인 차량)	○ 각 기관			중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
	소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)	○ 각 기관			소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)	○ 각 기관	
	경형화물차 (배기량이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		경형화물차 (배기량이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각 기관	
특수용	청소차	○ 각 기관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	특수용	청소차	○ 각 기관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간
	구급차	○ 각 기관			구급차	○ 각 기관	
	분뇨차	○ 각 기관			분뇨차	○ 각 기관	
	진료차	○ 각 기관			진료차	○ 각 기관	
	이동수리차	○ 각 기관			이동수리차	○ 각 기관	
	급수·살수차	○ 각 기관			급수·살수차	○ 각 기관	
	트럭트랙터	○ 각 기관			트럭트랙터	○ 각 기관	
	트레일러	○ 각 기관			트레일러	○ 각 기관	
	렉카차	○ 각 기관			렉카차	○ 각 기관	
	기타특수차	○ 각 기관			기타특수차	○ 각 기관	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2 - 10호

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포항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2. .

포항시장 박승호

1. 사업시행지 :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-20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학교)
- 명칭 : 포항공과대학교

3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- 주소 :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
- 성명 :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이사장 정준양

4. 사업계획 내용

가. 부지면적 : 1,671,661m<sup>2</sup>

나. 사업기간

- 기정 : 1986. 1. 17 ~ 2012. 12. 31

- 변경 : 1986. 1. 17 ~ 2020. 12. 31

다. 토지이용계획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세부시설명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구성비 (%)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		계		1,671,661		1,671,661	100.0	
기정	가	교사지구	효자동 519 일원	209,033		209,033	12.5	
기정	나	복지시설지구	지곡동 151-2 일원	20,134		20,134	1.2	
기정	다	기숙사지구	지곡동 280 일원	119,014		119,014	7.1	
기정	라	체육, 기타시설지구	지곡동 144 일원	108,826		108,826	6.5	
기정	마	교수숙소지구	지곡동 381-2 일원	29,374		29,374	1.8	
기정	바	파워플랜트, 창고	지곡동 294 일원	3,828		3,828	0.2	
기정	사	공학실험연구동지구	지곡동 717 일원	45,564		45,564	2.7	
변경	아	방사광가속기지구	지곡동 768-1 일원	315,020	증 90,172	405,192	24.2	
기정	자	오수처리지구	지곡동 134-2 일원	12,462		12,462	0.8	
변경	차	녹지지구	지곡동 산197 일원	760,444	감 89,485	670,959	40.1	
변경	카	도로지구	지곡동 125-2 일원	28,542	감 687	27,855	1.7	
기정	타	국제관리관	지곡동 산260-1 일원	19,420		19,420	1.2	

## 라. 건축계획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세부시설명	건축면적(㎡)			건축연면적(㎡)		
		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
기정	가	교사시설	53,180.86		53,180.86	206,777.60		206,777.60
기정	나	복지시설	2,192.32		2,192.32	6,353.62		6,353.62
변경	다	기숙사시설	17,567.63	-1,801.93	15,765.70	120,540.67	-26,077.67	94,463.00
변경	라	체육,기타시설	9,141.22	1,559.92	10,701.14	17,504.29	2,995.67	20,499.96
기정	마	교수숙소시설	2,997.19		2,997.19	52,065.91		52,065.91
기정	바	파워플랜트, 창고시설	6,229.30		6,229.30	17,169.37		17,169.37
기정	사	공학실험 연구동시설	11,574.82		11,574.82	32,054.58		32,054.58
변경	아	방사광 가속기시설	46,418.58	35,403.14	81,821.72	81,454.67	33,315.86	114,770.53
	자	오수처리시설						
	차	녹지지구						
	카	도로지구						
기정	타	국제관시설	3,445.08		3,445.08	16,886.58		16,886.58
총 합 계			152,747	35,161.13	187,908.13	550,807.29	10,233.86	561,041.15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변경사항 없음

6.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변경사항 없음

※ 관계 편입토지조서,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(☎054-270-34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포항시 고시 제2012 - 11호

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건 명 : 도로의 지정

2. 도로의 위치지정내용

대지위치	도로지번	지정면적 (m)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(m) (평균값)	지정일자	비고
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	68-4	184	약 104	약 0.56 ~ 7.40	2012.02.01	
	68-5	2				

3. 관련서류 : 포항시 건축과 비치

2012. 2. 1

포항시장 박승호

(문의처 : 건축과 054-270-3581)

# 공 고

포항시 공고 제2012 - 210호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인정시장이 등록됨에 따라 「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 제 11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2. 7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##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행정예고

### 1. 지정목적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정시장이 등록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추가지정하여 해당 구역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내용

- 지정대상 : 한라종합시장
  - 인정시장 인정일 : 2011. 10. 28

- 위 치 : 포항시 북구 용흥동 357-1번지 외 1필지
- 면 적 : 1,670m<sup>2</sup>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: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까지 범위  
이내

**3. 공람 및 공고기간 :** 2012. 2. 7 ~ 2. 27(20일간)

**4. 공람장소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**

○ 포항시청 홈페이지(www.ipohang.org) 및 시보

**5. 관련근거**

-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
-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
- 행정절차법 제46조

**6. 의견제출**

본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포항시장 (참조 : 경제노동과장, 주소 : 포항시 남구 시청로1 ☎ 270-2435, FAX : 270-2420, E-mail : hs1369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7. 기 타**
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(www.ipohang.org) 고시·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: 1.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의견서 1부  
2.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도(안) 1부. 끝.



